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763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박강산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강산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박강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763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 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예술활동 지역협력시스템 선진화’ 를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정하고 지역과 연계된 예술교육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2021~2025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함께하는 예술공연 체험, 국립국악원 연계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및 매일유업 연계 교원 초청 음악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운영 지원 등 지역 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 제14조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을 수용하나 상위 법령 및 동 조례와 중복 부분이 있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 6. 8.).
- 그러나 상위법의 경우 그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 주로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 추진 주체에 있어서 상위법의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규정이 상위법과 반드시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향후 보다 효과적인 협력 사업 추진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교육청의 조례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1] 동 조례 중 지역 연계에 관한 규정

| |
|--|
|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 3. 기초 예술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도모 |
| 제10조(업무) 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 |
| 제11조(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6.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표-2] 타 시도교육청 예술교육 관련 조례 중 협력체계 구축 조항 현황

| 연번 | 조례명 | 협력체계 구축 조항 |
|----|-------------------------------|---------------|
| 1 |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8조(협력체계 구축) |
| 2 |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 |
| 3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 |
| 4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
| 5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 |
| 6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 - |
| 8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9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 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 11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
| 12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4조</u> (생 략)</p> | <p><u>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u> <u>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u> <u>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u> <u>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u> <u>구축할 수 있다.</u></p> <p><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p> |